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건물 -

고유번호 1850-2001-001507



[건물]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00-60

【 표 제 부 】 (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01년5월26일	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00-60	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71.01㎡ 2층 60.66㎡	
2		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00-60 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19번길 68	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71.01㎡ 2층 60.66㎡	도로명주소 2012년9월28일 등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소유권보존	2001년5월26일 제23880호		소유자 안중대 360420-***** 부산 사하구 하단동 500-60
2	소유권이전	2024년11월20일 제50894호	2012년12월30일 상속	공유자 지분 9분의 3 손원필 360513-*****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73, 108동 2106호(다대동, 현대아파트) 지분 9분의 2 안성수 570305-*****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19번길 68(하단동) 지분 9분의 2 안인수 630406-*****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73, 108동 2106호(다대동, 현대아파트) 지분 9분의 2 안유수 650419-*****

[건물]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00-60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140번길 8-8(운양동) 대위자 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134, 9층(방배동, 위너스마당) 대위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소 2255684호 양수금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자대위
3	2번안유수지분강제 경매개시결정	2024년12월5일 제53384호	2024년12월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(2024타경112897)	채권자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110114-0069846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34, 9층 (방배동, 위너스마당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기록사항 없음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5년12월18일 13시12분56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850-2001-001507

[건물]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00-60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손원필 (공유자)	360513-*****	9분의 3	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73, 108동 2106호(다대동, 현대아파트)	2
안성수 (공유자)	570305-*****	9분의 2	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19번길 68(하단동)	2
안유수 (공유자)	650419-*****	9분의 2	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140번길 8-8(운양동)	2
안인수 (공유자)	630406-*****	9분의 2	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73, 108동 2106호(다대동, 현대아파트)	2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3	강제경매개시결정	2024년12월5일 제53384호	채권자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	안유수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